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적용 홍보요청

1.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1.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된 연료유 황산화물 규제*(0.5%이하)가 '21.1.1.부터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내항선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동법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등

대상선박	적용시점
어선을 포함한 모든 국내항해선박*	'21년 1월 1일 이후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나 제50조에 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날 또는 '21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0.5% 황산화물 규제는 어획물의 자숙용 보일러를 포함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모든 연료유에 적용

2. 이에 따라, 동 제도의 원활한 홍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하오니 지방해양수산청, 기관, 업·단체에서는 홈페이지 팝업창 등으로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카드뉴스는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시 중(정책자료-정책게시판-해사안전정책-게시물 228)

붙임 우리부 카드뉴스 1부. 끝.

해양수산부장관



수신자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인천해사고등학교장, 부산해사고등학교장,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기도지사, 경상남도지사, 부산항만공사사장, 인천항만공사사장, 울산항만공사사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한국선주협회장,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수협중앙회장,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사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선급 법령업무팀, 뷰로베리타스 한국 대표, 대한석유협회장, 한국급유선선주협회장, 부산해상유류판매업협회장, 지도교섭과장, 어선안전정책과장, 국립해양조사원장(운영지원과장), 동해어업관리단장(운영지원과장), 서해어업관리단장(운영지원과장), 남해어업관리단장(운영지원과장), 국립수산물학원장(운영지원과장)

주무관 **김영권** 해양수산사무관 **박형영** 과장 전결 2020.12.29. **최종욱**

협조자

시행 해사산업기술과-5550 (2020. 12. 29.)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58호 해사산업기술과 / <http://www.mof.go.kr>

전화번호 044-200-5835 팩스번호 044-200-5849 / kilkyk@korea.kr / 대국민 공개

“ 클린오션(Clean Ocean),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해양수산부! ”